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관광진흥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유인촌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관광지·관광단지(이하 “관광지등”)의 이용·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긴급하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「행정대집행법」에 따른 계고·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관리청”)가 관광지등에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관광진흥법」이 개정(법률 제20357호, 2024.2.27. 공포, 2024.8.28. 시행)됨에 따라, 야영용품 및 취사용품 등을 관리청의 직접 제거 대상 물건으로 정하고, 관리청이 관광지등에 방치된 물건을 제거하는 경우 그에 따른 물건의 보관·공고·매각 및 반환 등 그 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관광지등 내에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“물건등”을 규정(안 제57조의2 신설)
 - ① 야영용품, ② 취사용품, ③ 그 밖에 관광지등의 원활한 이용·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하는 물건등

- 제거한 “물건등”에 대한 관리청의 보관 및 처리절차를 규정(안 제57조의3 신설)
 - 물건등을 제거한 장소에 표시해야할 제거 사실 표시 내용 및 제거 물건의 보관 절차 규정
 - 물건등을 제거한 사실에 대한 관리청의 제거 사실의 공고 내용과 공고 기간 및 방법을 규정
 - 공고일 경과에도 찾아가지 않거나 및 제거한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관리청의 매각 및 폐기 등의 절차를 규정
- 보관 중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반환 절차 규정(안 제57조의4 신설)
 - 관리청이 보관 중인 물건등을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할 경우, 그 절차를 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의2, 제57조의3, 제5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7조의2(제거 대상 물건) 법 제69조의2제1항에서 “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(이하 “물건등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
1. 야영용품
2. 취사용품
3. 그 밖에 관광지등의 원활한 이용·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

제57조의3(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) 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“관리청”이라 한다)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물건등이 있던 곳에 물건등의 품명·수량, 제거 사실·일시 및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.

② 관리청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제거한 물건등을 관리청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, 물건등이 품명, 수량, 제거 장소, 제거 일시, 제거 이유 및 보관 장소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

장에 기록해야 한다.

③ 관리청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동안 해당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. 이 경우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.

1. 물건등의 품명·수량, 제거 장소, 제거 일시 및 제거 이유
2. 물건등의 보관 장소
3. 물건등의 제거·운반·보관 등에 든 비용을 내고 물건등을 찾아갈 것

④ 관리청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그 물건등을 찾아가지 않거나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, 공보 또는 방송 중 하나 이상의 매체와 해당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 다만, 일간신문, 공보 또는 방송에 의한 공고는 이를 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⑤ 관리청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물건등을 찾아가지 않거나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등을 매각할 수 있다.

⑥ 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물건등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건등을 폐기할 수 있다.

⑦ 관리청은 물건등을 제5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제6항에 따라 폐기한

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기하여 생긴 수익에서 그 물건등에 소요된 비용 (제거·운반·보관·처리 등에 든 비용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우선 충당 하고,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반환요구가 없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공고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귀속한다.

제57조의4(물건등의 반환) ① 관리청은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물건등을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남은 금액을 그 매각 또는 폐기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 신청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한다. 이 경우 물건등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등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57조의2(제거 대상 물건) 법 제69조</u> <u>의2제1항에서 “야영용품이나 취사</u> <u>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</u> <u>건”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 <u>해당하는 물건(이하 “물건등” 이라</u> <u>한다)을 말한다.</u> <u>1. 야영용품</u> <u>2. 취사용품</u> <u>3. 그 밖에 관광지등의 원활한 이용.</u> <u>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</u> <u>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</u> <u>정하는 물건</u>
<u><신 설></u>	<u>제57조의3(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</u> <u>처리) ① 관광지를 관할하는 특</u> <u>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</u> <u>장 · 군수 · 구청장(이하 “관리청”</u> <u>이라 한다)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</u> <u>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물</u> <u>건등이 있던 곳에 물건등의 품명 ·</u> <u>수량, 제거 사실 · 일시 및 보관 장</u> <u>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.</u> <u>② 관리청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</u>

현행	개정안
	<u>따라 제거한 물건등을 관리청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, 물건등이 품명, 수량, 제거 장소, 제거 일시, 제거 이유 및 보관 장소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.</u> <u>③ 관리청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동안 해당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. 이 경우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.</u> <u>1. 물건등의 품명·수량, 제거 장소, 제거 일시 및 제거 이유</u> <u>2. 물건등의 보관 장소</u> <u>3. 물건등의 제거·운반·보관 등에 든 비용을 내고 물건등을 찾아갈 것</u> <u>④ 관리청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그 물건등을 찾아가지 않거나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, 공보 또는 방송</u>

현행	개정안
	<u>중 하나 이상의 매체와 해당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 다만, 일간신문, 공보 또는 방송에 의한 공고는 이를 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</u> <u>⑤ 관리청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물건등을 찾아가지 않거나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등을 매각할 수 있다.</u> <u>⑥ 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물건등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건등을 폐기할 수 있다.</u> <u>⑦ 관리청은 물건등을 제5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제6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기하여 생긴 수익에서 그 물건등에 소요된 비용(제거·운반·보관·처리 등에 든 비용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우선 충당하고,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반환요구가 없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공고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귀속한다.</u>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제57조의4(물건등의 반환) ① 관리청은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물건등을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남은 금액을 그 매각 또는 폐기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신청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한다. 이 경우 물건등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등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	
연 락 처	(044) 203 - 2892